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윤정 의원)

의 안 번 호	16-100

발의년월일 : 2016. 10. 19.

발 의 자 : 김윤정·강희향·백남환
신종갑·유호렬·이동주
이봉수·이학래·허정행(9명)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·운영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규정 신설 (안 제21조의 2)

3. 관계법령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및 제52조 (긴급구조 현장지휘)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10. 20. ~ 2016. 10. 24.(의견제출 없음)

나. 붙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)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(이하 "통합지원본부장"이라 한다)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실무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
2.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부여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재난현장 인력·장비 등의 자원 동원,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21조의2(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)**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(이하 "통합지원본부장"이라 한다)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실무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 ③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.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부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. 재난현장 인력·장비 등의 자원 동원,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.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